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2017.11.13.)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	1
2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	3
3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4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5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6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10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11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2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5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	27
14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	29

의안번호 제2017 - 115호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0. 23.

나. 발 의 자: 이성복 의원 대표발의(6인)

(공동발의: 김종두·표주숙·이홍희·강철우·박희순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4에이치활동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나.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 도양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16호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0. 23.

나. 발 의 자: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7인)

(공동발의: 이홍희·권재경·김향란·표주숙·강철우·변상원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지역주민 교류증대와 활동성 강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2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제6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라. 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회의개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요청 시

○ 의결정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마.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3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제설·제빙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추가) 시설물의 지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14.12.30.)

다.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제설·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방법,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마.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비치해야 할 제설·제빙 도구를 명시하고,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추가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이 포함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얼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생활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4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개정이유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사항에 따라 손궤자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고,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궤자부담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손궤자부담금 조항 삭제함.(안 제3조)

나.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 완화함.(안 제3조)

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사유 및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 자치법규 일제 정비과제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손괴자부담금)의 도로 손궤자부담금이 삭제되고「도로법」 제91조의 개정사항인 원인자 비용부담 제도 개선으로도 보완이 가능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5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도로점용료 적용기준 개정내용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점용료 조정산식 완화함.(안 제5조)

○ (현행)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

○ (변경)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

나.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6조)

○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 감면

※ 근거: 도로법」 제61조제2항·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다.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그 밖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용어 순화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3항의 개정사항인 2개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적용기준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6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3.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명 및 제2조·제4조)

○ 제명: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위원회 명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나.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구 조례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호~제3호, 제10조~제13조)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 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

다.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위원 구성 정비함.(안 제4조)

○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신설

마.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상 필요한 사항 신설함.(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바. 위원회·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기금명칭을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함.(안 부칙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및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결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7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령 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함.(안 제53조제6항·제58조제3항)

○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 다만 법 제77조·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할 수 없음.

나.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함. (안 별표 7, 별표 8, 별표 10)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경계 완화

다.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내 공동주택 면적 비율 규제 완화함.(안 별표 7~별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적용.
조례로 위임 되어 정한 **규제강화 부분 삭제함**.

○ (현행) 70퍼센트 ⇒ (변경) 90퍼센트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별표 11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호 등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다목, 별표 9 제1호가목, 별표 11제1호라목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50미터 밖으로 건축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한 근거 및 **상업시설내(중심, 일반, 근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을 70→90% 완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28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함.(안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위원수, 위원 자격

○ 수질검사 실시 횟수, 실시 기관 등

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함.(안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으로 삭제

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함.(안 제3조~제6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수도법」제29조·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31호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안이유

○ 거창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인력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재 위탁하기 위함.

3. 위탁개요

가. 시 설 명: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시장 1길 20

다. 사업내용: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라. 위탁대상 사무

○ 조합원간 농작업 구인·구직 알선

○ 조합원간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

○ 관외 인력유치·알선 및 지원사업

○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

○ 농작업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마.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 운영계약서 체결 및 공증: 2017. 12월

- 재 수탁기관: 거창군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 결정

※ 재 위탁 사전 이행사항

○ 수탁기관 재 수탁 신청서 제출: 2017. 9. 4

○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 2017. 9. 20.

○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17. 9. 27.(가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으로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농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과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농촌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32호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안이유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재 위탁을 통하여 『거창사과테마파크 파크체험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위탁개요

가. 시 설 명: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나. 위 치: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다.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계	7.00ha		
과원시설(체험장)	1.75ha	○사과체험장(1.5ha) ○오미자체험장(0.25ha)	
공원시설 및 부속 건물	5.25ha	○공원시설(5.25ha)	
		○관리동 1동 (207㎡)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61.2㎡)	

라. 위탁대상 사무

○ 과원시설(사과, 오미자과원):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 축제, 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등 기타부속시설 유지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 시설사용료를 매년 12월말경 조수입의 14%를 거창군에 납부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거창사과 우수성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창사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1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 사 업 비: 1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100	100	100	-	-	100	-

○ 사업내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안정사업 컨설팅 지원

4. 부서의견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경남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20.6%, 경남도 33.5%, 시·군 2.8%, 금융기관 37.7%, 기업체 등이 5.4%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5년, 2017년 각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37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 운영지원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20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3년부터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에는 18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계획하고 있음.(17년 이사회에서 센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천만원 줄여 지원토록 검토함.)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및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17 - 138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0. 23.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7. 10.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1. 3.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290백만원(예정금액)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290	290	250	10	30	-

○ 사업내용

-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 가공제품 생산기반 시설지원
- 석재자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표면가공 기술개발
  (표면가공복합기법,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등

4. 부서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석재 표면가공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지원사업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활동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금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각종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지원하여 경남의 지역 특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지원함),

○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업의 전문기술인 고용창출, 매출 증대와 더불어 산업 생존력 강화 및 석재가공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 완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